

인천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나630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나630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35034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20. 2. 28

판결선 고 2020. 3. 20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350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W1'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D은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피고 C 소유의 E 굴삭기(2013. 7. 27. 요로 등록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매수 당시 이 사건 굴삭기에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저당권(채무자 피고 C,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7. 1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39,100,000원을 대 출받고,그중 35,513,947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설정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3. 7.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3. 8. 14. 채무자 원고,저당권자 G, 채권가액 39,100,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2013. 8. 19. 이 사건 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5. 31. D에게 본인 소유의 R 굴삭기를 매매대금 24,000,000원 에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굴삭기 R 매도대금을 새 신형 굴삭기 E 매수자금으로 굴삭기를 인수인계함'이라고 기재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5, 7내지 11,14, 15, 16, 18, 20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7. 15. D을 통하여 피고 C이 등록부상 소유 명의자이고 피고 B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하고, 굴삭기에 설정된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굴삭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하는 수 없이 2013년 8월 중순 무렵 D을 통하여 재차 굴삭기를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5. 31. 대물로 지급한 R 굴삭기와 사전에 지급한 10,818,000원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는데, 원고가 인도받은 굴삭기는 이 사건 굴삭기와 동일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매매대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였는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두 번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중복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두 번째 매매대금인 3,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17, 19, 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두 번째 매매대금인 3,500만 원 상당의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두 번째 매매대금 3,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우판사 오흥록판사 윤성현